제1623호
2019. 10. 10.(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고 시

제2019-79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

제2019-80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공 고

제2019-1128호 : 공인 등록 공고---------- 3

제2019-1132호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4

제2019-113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7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소재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사당동 425-13	사당로22길 80	2019.9.5.	신축	2010-06-10	사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열한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사당동 284-45	사당로16아길 55-4	2019.9.5.	신축	2010-06-10	사당로16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여덟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사당동 317-4	사당로20아길 29-3	2019.9.5.	신축	2010-06-10	사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곱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신대방동 366-41	보라매로9길 38	2019.9.5.	신축	2011-04-07	보라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다섯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사당동 429-9	동작대로11가길 4	2019.9.18.	신축	2010-06-10	동작대로11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사당동 265-86	사당로16가길 12-12	2019.9.18.	신축	2010-06-10	사당로16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8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소재지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주소 폐지일
상도동 283-120	성대로6사길 30	건물멸실	2019.9.5.
상도동 283-212	성대로6사길 26	건물멸실	2019.9.5.
대방동 11-38	등용로71-2	건물멸실	2019.9.18.
신대방동 364-5	여의대방로22마길 35-5	건물멸실	2019.9.18.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28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인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 등록하고 동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 공인등록 내역

공인의 종 류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일자	사 유	신조인영	비 고
청인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옴부즈만의인	한글전서체 3㎝ × 3㎝	2019.10.10.	**동작구 옴부즈만 활동**		등록
청인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옴부즈만의인	한글전서체 3㎝ × 3㎝	2019.10.10.	**전자문서 발송 시 전자이미지 청인 날인**		전자이미지 등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32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과-20316(2019.9.23.)호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과세일자	압류일자
1	상도동 7-1*2	이*수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55.96 ㎡)	1,007,280원	2019.6.10	2019.9.19

2. 공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24.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10. 24.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처분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미시정되어 기예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장기 체납되어 압류예고한 후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1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며, 성비에 따른 기계적 대등이 아닌, 남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권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등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목적(안 제1조)개정

나. 양성평등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신설(안 제24조의 2)

다.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규정 명시(안 제 31조 제4항 및 제5항)

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49조), 조성기준(안 제50조), 조성계획의 실시(안 제51조)조항 명시

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조항 명시(안 제52조)

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항 마련(안 제53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 여성정책팀(전화 : 820-9726, FAX : 820-9988, E-mail : danielia@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성장과”를 “성장과 돌봄 및”으로 한다.

제8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를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조제2항”을 “영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주민, 단체, 여성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여성 ·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여성기업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5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49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0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51조(조성계획의 실행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공무원 및 구민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53조(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 여성 1인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제6장제50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 평가하여----------.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 성장과 돌봄 및 ----------.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제15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생 략)	제15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마련----------.
제21조(도시기반시설 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21조(도시기반시설 등) ① ----------성별영향평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성별영향 평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목변경 2016.10.27.〉 ① (생 략)	제24조(양성평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목변경 2016.10.27.〉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5조 양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개정 2016.10.27.〉	② ----------.
	1.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4.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5.~8. (생 략)	5.~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주민, 단체, 여성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여성·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여성기업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①~③ (생 략)	제31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5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5조(간사) ----------담당 팀장으로---.
제40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10.27〉	제40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기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4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
제6장 보칙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신 설>	제49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신 설>	제50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신 설>	제51조(조성계획의 실행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공무원 및 구민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협의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신 설>	제53조(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 여성 1인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신 설>	제7장 보칙
제49조 (생 략)	제54조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50조 (생 략)	제55조 (현행 제50조와 같음)

동작구보

제1623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